

의안번호	2202820
의 퇴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4.11.15.
추 계 번호	24B28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512억원, 2030년 3,44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4,916억원(연평균 2,983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육아휴직 급여 (안 제70조제4항)	2,512	2,760	2,991	3,208	3,444	14,916	2,98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수급자의 임금 분포 및 지급기간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고의 부담)(제1항)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제4항)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3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고의 부담)(제1항)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일반회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보험기금 부담액은 감소함 – 현행 육아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 회계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현재 국가는 「고용보험법」 제5조²⁾에 따라 고용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모성보호급여와 관련하여 2025년 예산안 기준 5,50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91-911)을 지원하고 있음
2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제4항)	○	—
3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제5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80%가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함³⁾ – 개정안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다르게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지급될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단가를 확정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발생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7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기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액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상한액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상한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단가”에서 현행 “150만원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토대로 산출
 - 본 추계서에서 모든 제도적 사항을 고려하기 곤란하므로, 상한액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육아휴직 제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례조항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
 - － 따라서 자녀의 출생 순위, 동일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순서 등 제도 내에서의 차등 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2019~2023년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 이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⁴⁾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
 - 따라서 2019~2023년 육아휴직 제도는 이직 등의 사유로 원 직장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의 행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의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및 행태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 출산율, 육아휴직에 대한 행태 및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임금 구간에 속하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통상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실제 임금 분포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상한액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급자 수에 지원기간과 산출된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 본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년)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수급자 수, 임금 및 성별 분포,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음
 - (수급자 수) 추계기간 동안(2026~2030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육아휴직 현황을 토대로 추계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표 2]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2019~2023년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휴직 수급자 수	105,165	112,040	110,555	131,087	126,008
남자	22,297	27,423	29,041	37,885	35,336
여자	82,868	84,617	81,514	93,202	90,672

자료: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수급자 수

- (여성) 추계기간 동안 여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에 최근 5년간(2019~2023년)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남성) 추계기간 동안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중이 매년 3.5%p(최근 5년간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율의 평균값) 상승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최대 여성 육아휴직자의 50.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전망: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육아휴직 수급자	남성	47,875	49,605	50,734	51,889	53,069
	여성	97,004	99,211	101,468	103,777	106,139
	합계	144,879	148,816	152,203	155,666	159,2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임금분포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임금분포에 추계기간 동안 추계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적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의 임금 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는 2023년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으로 가정을 토대로 추계

[표 4] 임금분포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2026~2030년

(단위: 명)

임금 구간	임금분포	2026	2027	2028	2029	2030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87.5만원	0.4%	379	388	396	406	415
87.5~125만원	1.5%	1,449	1,482	1,515	1,550	1,585
125~187.5만원	4.4%	4,259	4,356	4,455	4,557	4,661
187.5~250만원	41.9%	40,657	41,582	42,528	43,496	44,486
250~300만원	20.6%	20,026	20,482	20,948	21,424	21,912
300~350만원	13.1%	12,689	12,978	13,273	13,575	13,884
350~375만원	4.1%	4,005	4,096	4,189	4,284	4,382
375만원~	14.0%	13,539	13,848	14,163	14,485	14,815
합계		97,004	99,211	101,468	103,777	106,139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87.5만원	0.1%	34	35	36	37	38
87.5~125만원	0.2%	81	84	86	88	90
125~187.5만원	1.7%	825	855	875	894	915
187.5~250만원	26.1%	12,481	12,932	13,227	13,528	13,836
250~300만원	18.6%	8,909	9,231	9,441	9,656	9,876
300~350만원	17.8%	8,518	8,826	9,027	9,232	9,442
350~375만원	6.7%	3,184	3,299	3,375	3,451	3,530
375만원~	28.9%	13,842	14,342	14,668	15,002	15,344
합계		47,875	49,605	50,734	51,889	53,069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기간) 남성 1.5개월, 여성 3.5개월을 적용하여 산출

- 자료의 한계로 인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각 개인의 구체적인 통상임금 및 사용기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2023년 평균 기준 육아휴직 지급기간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지급기간(6개월)을 차감하여 산출

[표 5]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지급기간: 2019~2023년

(단위: 월)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성	7.0	7.0	7.2	7.3	7.5
여성	10.2	10.2	10.3	9.6	9.5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단가) 개정안에 따른 지원단가의 증가액은 “상향조정된 지원단가”에서 “현행 기준 지원단가”를 차감하여 산출
 -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상한액 상향에 따른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토대로 산출
 - － 자료의 한계로 임금 구간에 속하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통상임금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간별 평균통상임금은 임금 구간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출
 - － “상향조정된 지원단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최근 5년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7.0%)을 적용하여 산출

[표 6]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1~2025년

(단위: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1,827,831	1,944,812	2,077,892	2,228,445	2,392,013

자료: 보건복지부

[표 7]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중위소득	256	274	293	313	335

주: 2023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따라서 2023년 기준 구간별 통상임금의 평균값에 육아휴직급여의 수급률(통상임금 80%)⁵⁾을 적용하였으며, 산출된 “수급률을 적용한 통상임금”에 현행 규정과 개정안에 따른 상한액(을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산출
-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단가에 임금상승 등을 적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선

5)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미만이었던 근로자가 추계기간 내에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액 증가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임금상승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단가에 임금상승 등을 적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선 미만이었던 근로자가 추계기간 내에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액 증가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8] 상한액에 따른 월별 지원단가

(단위: 만원)

임금 구간	구간별 평균통상 임금(A)	수급률을 적용한 통상임금 (B=A×0.8)	상한액 (150만원) 적용 지원단가	상한액(중위소득) 적용 지원단가				
				2026	2027	2028	2029	2030
~87.5만원	-	70.0	70.0	70.0	70.0	70.0	70.0	70.0
87.5~125만원	106.3	85.0	85.0	85.0	85.0	85.0	85.0	85.0
125~187.5만원	156.3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87.5~250만원	218.8	175.0	150.0	175.0	175.0	175.0	175.0	175.0
250~300만원	275.0	220.0	150.0	220.0	220.0	220.0	220.0	220.0
300~350만원	325.0	260.0	150.0	255.8	260.0	260.0	260.0	260.0
350~375만원	362.5	290.0	150.0	255.8	273.6	290.0	290.0	290.0
375만원~	375.0	300.0	150.0	255.8	273.6	292.7	313.0	334.8

주: 2023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산출된 수급자 수에 지원기간과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임금구간이 375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이 추계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선을 초과함
 -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추계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받고, 일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선 미만이었던 근로자가 상한선을 받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추계서는 해당 구간의 모든 수급자가 상한액을 받는 것으로 가정

[표 9]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임금 구간	2026	2027	2028	2029	2030
상한액이 150만원일 경우 재정소요					
~87.5만원	929	950	971	993	1,016
87.5~125만원	4,310	4,408	4,508	4,611	4,716
125~187.5만원	18,635	19,059	19,493	19,936	20,390
187.5~250만원	213,449	218,306	223,274	228,355	233,551
250~300만원	105,137	107,529	109,976	112,478	115,038
300~350만원	66,619	68,135	69,685	71,271	72,893
350~375만원	21,024	21,502	21,992	22,492	23,004
375만원~	71,082	72,700	74,354	76,046	77,776
소계(A)	501,185	512,589	524,253	536,183	548,383
상한액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일 경우 재정소요					
~87.5만원	929	950	971	993	1,016
87.5~125만원	4,310	4,408	4,508	4,611	4,716
125~187.5만원	18,635	19,059	19,493	19,936	20,390
187.5~250만원	249,024	254,691	260,486	266,414	272,476
250~300만원	154,200	157,709	161,298	164,968	168,722
300~350만원	113,626	118,100	120,788	123,536	126,347
350~375만원	35,859	39,226	42,517	43,485	44,474
375만원~	121,239	132,623	145,077	158,700	173,602
소계(B)	697,821	726,766	755,138	782,643	811,743
상한액의 확대에 따른 여성 육아휴직자 추가재정소요					
추가재정소요 (B-A)	196,637	214,177	230,885	246,461	263,360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장래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0] 남성 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임금 구간	2026	2027	2028	2029	2030
상한액이 150만원일 경우 재정소요					
~87.5만원	36	37	38	39	39
87.5~125만원	104	107	110	112	115
125~187.5만원	1,547	1,603	1,640	1,677	1,715
187.5~250만원	28,083	29,098	29,760	30,437	31,130
250~300만원	20,046	20,771	21,243	21,727	22,221
300~350만원	19,165	19,858	20,310	20,772	21,244
350~375만원	7,165	7,424	7,593	7,765	7,942
375만원~	31,144	32,270	33,004	33,755	34,523
소계(C)	107,290	111,167	113,697	116,284	118,930
상한액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일 경우 재정소요					
~87.5만원	36	37	38	39	39
87.5~125만원	104	107	110	112	115
125~187.5만원	1,547	1,603	1,640	1,677	1,715
187.5~250만원	32,764	33,948	34,720	35,510	36,318
250~300만원	29,401	30,464	31,157	31,866	32,591
300~350만원	32,688	34,420	35,203	36,004	36,824
350~375만원	12,220	13,543	14,679	15,013	15,355
375만원~	53,120	58,868	64,396	70,443	77,058
소계(D)	161,880	172,990	181,943	190,665	200,015
상한액의 확대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자 추가재정소요					
추가재정소요 (D-C)	54,590	61,823	68,246	74,380	81,085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장래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상한액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할 경우의 재정소요액에서 상한액이 150만원일 경우 재정소요액을 차감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512억원, 2030년 3,44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4,916억원(연평균 2,983억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육아휴직 급여 (안 제70조제4항)	2,512	2,760	2,991	3,208	3,444	14,916	2,983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수급자의 임금 분포 및 지급기간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최근 육아휴직 현황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지급기간 및 육아휴직 수급자의 임금 분포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자 수의 증감 추이와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지급기간 등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실적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한 주요 전제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